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자치행정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2015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정원 조정 : 619명 → 633명 (14명 증)
- 종류별 조정 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당 초	619	1	612	1	3	2
변 경	633	1	626	1	3	2
증 감	14	-	14	-	-	-
			· 기준인건비 : 14명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소요경비 : 523,047천원(시비481,047천원)
- 붙임 : 비용추계서 참고(5년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15년 1월 14일 ~ 1월 24일(1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부서협의기간 : 2015년 1월 13일 ~ 1월 16일(3일간)

나. 협의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해당사항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의 총수는 619명”을 “정원의 총수는 6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5명”을 “61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재연
	팀장 직위·성명	시정팀장 박진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유정 (790-5388)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633</u>	<u>633</u>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u>626</u>	<u>626</u>					
3급	1	1					
4급	5	4		1			
5급	43	25	2	3		1	12
6급 이하 계	<u>577</u>	<u>577</u>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계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u>정원의 총수는 619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05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u>정원의 총수는 633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19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비 용 추 계 서

1 산 출 금 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방세 추가소요 금액(A)-(B)		481,047	490,424	500,654	553,815	565,992
추가소요 인건비 (A) (총 14명)	소계	523,047	532,424	542,654	553,815	565,992
	직급상향분	103,047	112,424	122,654	133,815	145,992
	신규채용분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국고보조금 (B)(사회복지 2명)		42,000	42,000	42,000		

- 증원인력 급여 산정기준
 - 직급상향분: 직급별 기본급, 직급보조비 상승금액 반영
 - 신규채용분: 1인당 30,000천원
- 사회복지직 국고보조 금액 기준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편▶2명 : (지원년도:2015년~2017년 지원금액 : 42,000천원)
 - 신규채용분: 1인당 30,000천원 중 70% 3년간 지원
- 연도별 인건비는 공무원급여상승분(3.8%)호봉상승분(5.3%) 등을 감안하여 9.1% 반영

2 세 부 산 출 내 역

(단위 : 원/명)

구 분	계	산출기초				
		인원	개월	기본급 상승분	직급보조비 상승분	
계	523,047,600					
직 급 상 향 분	소계	103,047,600	12	12	1,881,900	50,000
	6급	22,651,200	3	12	614,200	15,000
	7급	74,016,000	8	12	736,000	35,000
	8급	6,380,400	1	12	531,700	
신규채용분		420,000,000	14	12		

※ 산출근거

- 기본급:6급(25호봉)3,381,100원,7급(18호봉)2,766,900원,8급(10호봉)2,030,900원,9급(5호봉)1,499,200원
- 직급보조비: 6급 155,000원, 7급 140,000원, 8급 105,000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 재 연 (031-790-5375)
- 시 정 팀 장 박 진 호 (031-790-5142)
- 담 당 자 정 유 정 (031-790-5388)